

『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을 통합 보완한 「도시개발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구미시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7조)
 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
4. 참고사항

- 「도시개발법」 제60조제1항
-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68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
 - 「도시개발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구미시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안 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(안 제7조)

○ 검토 결과는

- 「도시개발법」 제정에 따른 구미시 도시개발사업 촉진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